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방재정보
광장



법령정보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3호, 2013.8.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안 제70조).

다.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실시간 입력 및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4항·제5항 및 제55조의2 신설).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계 기관”을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 방안
6. 유흥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법령정보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립·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제38조제1항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방재안전대책에”를 “방재관리대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를 “방재관리대책 업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방재안전대책”을 각각 “방재관리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

무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재안전대책”을 각각 “방재관리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을 “방재관리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을 “방재관리대책”으로, “그 업무를”을 “그 대행업무”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 ②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책정보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로 한다.

제71조 중 “구호금품”을 “복구비용·구호금품”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의 6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시·도에서 적립·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활용하여 국고 등 배정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3. 주요내용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8조)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금과 주택침수, 세입자 보조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재해발생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토록 되어있으나 2005년 재해복구제도 개선으로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를 합산하여 등급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전체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보전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해구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사전 지급. 이 경우 사전 지급한 비용은 같은 규정 별표1과 별표3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보전한다.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 6. (생 략)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8조(재 해 구 호 기 금 의 용 도)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사전 지급. 이 경우 사전 지급한 비용은 같은 규정 별표1과 별표3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보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별자치도지사----- -----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 (생략)</p> <p>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_____.</p>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 22호(2007.4.12)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0호(2012.8.20)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 호(2013.5.)

1. 개정이유

- 도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기반 마련 및 활성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방재표준품셈」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표준품셈 제시(안 제2장 제2절)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세부수립기준에 근거하여 단위업무에 대한 품·단가 산정 및 보정계수 등 합리적인 대가기준 제시
- 나. 그 밖에 일부내용 자구 수정(안 제1장 제1절, 안 제2장 제2절)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표준품셈 제시에 따라 방재품셈의 일부내용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절 서문 (생략) 1-1 적용기준 ~ 1-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의 정의 (생략)	제1절 서문 (일부 지구수정) 1-1 적용기준 ~ 1-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2절 적산구성 ~ 제3절 적산기준 (생략)	제2절 적산구성 ~ 제3절 적산기준 (현행과 같음)
제2장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제2장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제1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1 정의 ~ 1-7 표준성과품 (생략)	제1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1 정의 ~ 1-7 표준성과품 (현행과 같음)
제2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2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신 설)	I.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1-1 정의 1-2 자료제공의 전제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4 대가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 방법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기준 1-6 주요 업무내용 1-7 표준성과품
(신 설)	II.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2-1 정의 ~ 2-6 주요 업무내용 (일부 지구수정) 2-7 표준성과품 (현행과 같음)
2-1 정의 ~ 2-7 표준성과품 (생략) 2-7 표준성과품 (생략)	
제3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3-1 정의 ~ 3-7 표준성과품 (생략)	제3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3-1 정의 ~ 3-7 표준성과품 (현행과 같음)
제4절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1 정의 ~ 4-7 표준성과품 (생략)	제4절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1 정의 ~ 4-7 표준성과품 (현행과 같음)